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19가단52879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에스엔
담당변호사 김형규
변 론 종 결 2021. 9. 7.
판 결 선 고 2021. 10. 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9. 4.경 20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5. 피고의 남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원금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8. 7. 25.(이후 2019. 7. 25.로 연장)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C는 2017. 7. 26.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제 1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2. 20. C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원금 190,000,000원, 보증기한 2019. 12. 20.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C는 2018. 12. 21.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 주식회사(이하 'E은행'이라 한다)로부터 200,000,000원을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을 받았다(이하 '제2 대출'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제1, 2 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7. 5. 22.부터 연 10%이다.

라. C의 대표이사 B은 제1, 2 보증약정 체결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면제받는 대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공문서, 사문서의 위 변조 및 허위자료제출 금지', '업무상 횡령, 배임, 부당금품 제공 및 수수, 자금유용 등의 금지', '담보대출의 용도 외 사용금지', '기타 투명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 등 투명경영의무 또는 책임경영의무를 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① 제1 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위 보증약정에 따른 C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거나(이하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약정'이라고 한다), ② 제2 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책임경영의무위반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이하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이라고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약정을 하면서 제출한 자금집행계획서에는 '자금용도 운영자금, 소요금액 삼억원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기술사업계획서에는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란에 '운영/생산자금(재료비 등) 용도 450,000,000원, 기술개발비 용도 5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은 자기자금, 300,000,000원은 보증신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을 하면서 제출한 자금집행계획서에는 '① 자금용도 재료비, 소요금액 150,000,000원, ② 자금용도 인건비, 소요금액 5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 자금집행 예정시기 2018. 12.부터'라고 기재되어 있다[기술사업계획서에는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란에 '운영(생산)자금 용도 중 재료비 300,000,000원, 인건비 50,000,000원, 기타경비 50,000,000원, 기술개발비 용도 10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은 자기자금(매출수금자원활용), 200,000,000원은 보증신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D은행은 2019. 8. 6. 원고에게 제1 대출에 관하여 2019. 7. 25.자 원금연체를 이유로 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고, E은행은 2019. 8. 5. 원고에게 제2 대출에 관하여 2019. 7. 10.자 원금연체를 이유로 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9. 8. 30. 제1 보증약정에 따라 D은행에 제1 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합계 272,652,272원(= 원금 270,000, 000원 + 이자 2,652,272원)을 대위변제하고, 2019. 9. 9. 제2 보증약정에 따라 E은행에 제2 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합계 180,163,551원(= 원금 178,088, 900원 + 이자 2,074,65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사. 원고는 제2 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2019. 9. 9. 미환급보증료 584, 060원을 회수처리하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보증약정에 따른 491,910원의 추가보증료와 1,760원의 확정손해금(회수 처리한 미환급보증료 584,060원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2019. 9. 9.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아. B은 2015. 9. 8. F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0원, 존속기간 2015. 11. 1.부터 2017.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1차례 갱신되었다. 피고는 2019. 5. 22. 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0원, 존속기간 2019. 5. 22.부터 2020. 12. 31.까지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의 기존보증금을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 15, 1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 보증약정과 관련하여, B은 위 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에게 임대인 I공제회, 임차인 C,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인 2017. 7. 1.자 임대차계약을 제출하여 마치 I공제회에 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하였으나, C는 제1 대출로 받은 대출금으로 I공제회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결국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 변조된 자료 내지 허위자료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B은 제1 대출금의 자금용도에 관하여 '운영(생산)자금 용도 중 재료비 300,000,000원, 인건비 50,000,000원, 기타경비 50,000,000원, 기술개발비 용도 1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실제로는 I공제회에 사업보증금으로 200,000,000원,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자금을 유용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고, 기타 투명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피고 B은 투명경영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제1 대출금에 대하여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약정에 따라 연대보증책임을 진다.

2) 제2 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B은 제2 대출금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용도에 맞지 않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C의 법인카드(E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개인적인 용도의 결제내역이 다수 존재하는바,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은 방법의 회계처리이고,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거나 자금 유용 내지 용도 외 사용이며, 기타 투명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피고 B은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제2 대출금에 대하여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원고는 B에게 구상금 채권 내지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고, B은 2019. 4.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금 20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 위 증여 당시 원고의 구상금

채권 내지 손해배상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선택적으로, 원고는 B에게 구상금 채권 내지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고, B은 2019. 4.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금 200,000,000원의 반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인수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내지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 반환을 직접 구한다.

나.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권자취소를 통해서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권리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주장과 같은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453,309,493원의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12388호)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21. 8. 19.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이후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2021. 9. 8. 확정되었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내지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보전될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은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참조). 따라서 이를 피대위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서 더 살펴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